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59호 2020. 10. 2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0-1278호)
-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0-127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예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 정비(정비대상 조례 9건)

연번	조례명	정비대상 용어	순화 용어	비 고
1	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	미연에	미리	안 제1조
2	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	미연에	미리	안 제2조
3	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	분여	분배	안 제3조
4	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	쌍태아	쌍둥이	안 제4조
5	예천군의회 포상 조례	양양	드높이다	안 제5조
6	예천군 포상 조례	양양	드높이다	안 제6조
7	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	입방미터	세제곱미터	안 제7조
8	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	통리하다	총괄하다	안 제8조
9	예천군 주차장 조례	폭원	너비	안 제9조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b1784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기획감사실

3) 팩스 : 054-650-60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(전화: 054-650-6825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
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 에서도 확인하실 수

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
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3조(「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여)”를“(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여”를 “분배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수익분여의 환가)”를“(수익분배의 환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분여”를 “분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분여율”을 “분배율”로 한다.

제4조(「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쌍태아”를 “쌍둥이”로 한다.

제5조(「예천군의회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”로 한다.

제6조(「예천군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”로 한다.

제7조(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입방미터당”을 각각 “세제곱미터당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“통리”를 “총괄”로 한다.

제9조(「예천군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)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 중 “폭원”을 “너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제설·제빙작업”이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<u>미연에</u>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	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리</u> ----- ----- -----.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6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) ① ~ ⑤ (생략)	제16조(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,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,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<u>미연에</u>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리</u> ----- ----- -----.
⑦·⑧ (생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3조(「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5조(<u>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여</u>) ① (생략)	제5조(<u>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</u>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<u>분여</u> 할 수	② ----- ----- ---- <u>분배</u> ----

현행	개정안
③ (생략) 제6조(수익분여의 환가)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<u>분여</u>는 윤별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.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<u>분여율</u>을 누진 계산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(수익분배의 환가) ----- ----- <u>분배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분배율</u>-----.

제4조(「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로 한다. 다만, 출생아가 <u>쌍태아</u>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 <u>쌍둥이</u> ----- ----- 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「예천군의회 포상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3. 사회도의와 <u>미풍양속의 순화</u> <u>양양에</u> 솔선수범한 경우	제5조(표창장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미풍양속을 드높</u> <u>이는 데</u> -----

제6조(「예천군 포상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 1.·2. (생략) 3. 사회도의와 <u>미풍양속의 순화</u> <u>양양에</u> 솔선수범한 경우	제5조(표창장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미풍양속을 드높</u> <u>이는 데</u> -----

제7조(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30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·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<u>입방미터당</u>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	제30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제곱</u> <u>미터당</u> ----- ----- --.
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<u>입방미터당</u>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(이하 ‘감정평가업자’라 한다)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세제곱</u> <u>미터당</u>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「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<u>통리</u>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 의장이 된다. ② (생략)	제5조(위원장) ① ----- -- <u>총괄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「예천군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 주차방법 및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, 도로의 <u>폭원</u> ,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 ----- ----- <u>너비</u>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2일

예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
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 정비(정비대상 규칙 3건)

연번	규칙명	정비대상 용어	순화 용어	비 고
1	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	미연에	미리	안 제1조
2	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	체차	차례로	안 제2조
3	예천군 재무회계 규칙	해득	이해	안 제3조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b1784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기획감사실

3) 팩스 : 054-650-605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(전화: 054-650-6825)에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 에서도 확인하실 수
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
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
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제1조(「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체차”를 “차레”로 한다.

제3조(「예천군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제2항 본문 중 “해득”을 “이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)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<u>미연에</u> 방지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) ① ----- ----- ---- <u>미리</u>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조(「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3조(교부금액)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<u>체차</u> 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(생략)	제3조(교부금액) ① ----- ----- <u>차레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조(「예천군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제130조(금액, 수량 등의 정정) ① (생략)	제130조(금액, 수량 등의 정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금전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, 수량,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·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,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<u>해득</u>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. 다만,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해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